

대전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19가단22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웅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8. 12.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8. 12. 19. 접수 제1025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F의 대표인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9,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D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만일 변론종결시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본안에 관한 판단사항인 만큼,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 24,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8. 4월 중순경부터 2018. 11. 8.까지 E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한편 G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E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G의 어머니로서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G와 H은 2018. 5월경부터 2018. 11. 8.까지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원고 A에게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 상해 등을 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1. 26. G, D 등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8032 사건에서 2022. 11. 8. “G와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690,32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2.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G, D 등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D은 2018. 12.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79,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G와 H은 2018. 12. 19. 별지2.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478 사건에서 2019. 5. 29. 유죄가 인정되어 G와 H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9노1775 사건에서 2020. 2. 13.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G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H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바) D은 2022. 12. 8. 대전지방법원 2022년 금 제799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A’, 공탁금액을 ‘35,925,294원’으로, 같은 법원 2022년 금 제3118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B’, 공탁금액을 ‘3,629,999원’으로 하여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D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들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D이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원리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변제로 소멸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점, 그 밖에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당사자의 주장과 소송활동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별지1.]

목 록

1. 대전 서구 I 대 175㎡

2. 대전 서구 I

 [도로명 주소] 대전 서구 J

 연와세벽, 경량철골조 스라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74.68㎡

 2층 37.905㎡

 지층 34.4㎡

 부속건물 1.44㎡

-끝-

[별지2.]

범죄사실¹⁾

1. G와 H의 공동범행

가. 2018. 9월 초순경 특수폭행

G와 H은 2018. 9월 초순 16:00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원고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배송 중 2차레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H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7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에게 다시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G는 피해자에게 "나는 별도다, 너 다시 엎드려"라고 한 뒤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부, 양 다리 부위, 얼굴을 가리던 팔뚝 부분, 뒤통수,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 줄 테니 말 잘 들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엎드리도록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G와 H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9월 중순경 특수폭행

G와 H은 2018. 9월 중순 20:00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송 중 다시 교통사고를 났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는 피해자를 질책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0회 걷어차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1) 이 사건과 관련된 G와 H에 대한 각 범죄사실만을 기재한다.

엎드리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재차 엎드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10회 때린 뒤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다시 엎드리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G와 H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10월경 특수공갈

G와 H은 2018. 10월 초순 14:00경 K 사무실에서 H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휴대전화를 내 손에 올려놔"라고 명령하여 피해자의 아이폰S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취하라고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앞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는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한 뒤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상해로 부어오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자 G에게 이를 알리고, G는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피해자에게 "아우, 이 새끼, 이런 거 또 찍어놨네, 빨리 가서 업무를 봐라"라고 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랑 툭툭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등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G와 H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2018. 11. 2.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G와 H은 2018. 11. 2. 11:11경 K 창고에서 G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영상 앱으로 피해자가 아침에 들어온 음료수 물품을 옮기지 않고 화장실로 몸을 씻으러 가는 모

습을 확인하고 H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왜 화장실에 숨어있었냐. 일을 빼내고 싶었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5회 걷어차고, 이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허벅지를 잡던 피해자의 머리를 우측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H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G와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G의 범행

가. 2018. 5월경 강요, 특수폭행

G는 2018. 5월 중순 15:00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가 배송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여기는 한명이 잘못하면 단체로 기합을 받아야 한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두 다리와 정수리를 바닥에 닿은 상태로 두 손은 '얼중쉬어' 자세를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하고, 이어 피해자를 나가라고 한 뒤 대걸레 나무자루로 엮드려 있던 피해자 L의 허벅지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G는 피해자, 피해자 L를 협박하여 피해자, 피해자 L에게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나무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월 초순경 특수폭행

G는 2018. 6. 초순 16:00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 손바닥을 내밀게 한 다음 대걸레 나무자루로 6회 때렸다.

이로써 G는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나무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6월 중순 11:00경 특수폭행

G는 2018. 6월 중순 11:00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송 준비를 똑바로 하지 못하

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 손바닥을 내밀게 한 다음 대걸레 나무자루로 10회 때렸다.

이로써 G는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나무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6월 중순 17:00경 특수폭행

G는 2018. 6월 중순 17:00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해자 L가 물건을 하나 빠뜨리고 배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피해자 L에게 양 손바닥을 내밀게 한 다음 대걸레 나무자루로 피해자를 6회, 피해자 L를 10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G는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나무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피해자 L를 각각 폭행하였다.

마. 2018. 8. 13.자 특수상해

G는 2018. 8. 13. 20:00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송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옆에 있던 L에게 지시하여 테이블에서 뽑아 가져온 테이블 쇠다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때리고, 아픔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도 다시 피해자에게 의자 위에 등받이를 앞으로 보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테이블 쇠다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때렸다. 이에 다시 아픔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의자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다시 올라가, 만약 올라가지 않으면 니 몸 어디 하나 부러진다, 똑바로 다시 올라가"라고 위협하여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L에게 지시하여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과 의자 등받이를, 피해자의 양 발과 의자 하단을 각각 같이 묶게 하고 발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묶게 한 후 테이블 쇠다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5회 때리고, 테이블 쇠다리가 찌그러지자 L에게 다른 테이블 쇠다리를 빼오라고 지시하여 L가 가져온 테이블 쇠다

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3회 때렸다.

이로써 G는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쇠다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바닥 염증 등을 가하였다.

바. 2018. 10. 31.자 강요

G는 2018. 10. 31. 09:3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영상 앱으로 K 사무실의 상황을 보던 중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배송지 전표입력을 하는 것을 보고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너 뭐하나, 아침부터 삐대냐, 대가리 박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G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분 동안 두 다리와 정수리를 바닥에 닿은 상태로 두 손은 '얼중쉬어' 자세를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G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2018. 11. 1.자 폭행

G는 2018. 11. 1. 16:33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프린터로 서류를 복사한 뒤 서류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18. 11. 2. 01:41경 폭행

G는 2018. 11. 2. 01:41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창고 정리정돈을 똑바로 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2018. 11. 2. 02:00경 폭행

G는 2018. 11. 2. 02:00경 K 사무실 부엌에서 피해자가 라면봉지를 치우지 않고 부엌을 정리정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다리를 3회 걷어차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차. 2018. 11. 2. 02:16경 폭행

G는 2018. 11. 2. 02:16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송지의 컴퓨터 입력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책상에 놓여있던 탁상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카. 2018. 11. 2. 15:03경 폭행

G는 2018. 11. 2. 15:03경 K 창고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영상 앱으로 피해자가 컴퓨터에 배송지 전표 입력 작업을 하다가 졸았던 모습을 확인하고 뒤늦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넌 왜 자고 있냐"라고 하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6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허벅지를 잡고 상체를 숙이자 우측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타. 2018. 11. 5. 자 폭행

G는 2018. 11. 5. 23:40경 K 창고에서 박스 안에 조명배터리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배터리를 왜 충전하지 않고 박스 안에 그대로 두고 있냐. 가서 충전기에 꽂아 놓아라"라고 하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파. 2018. 11. 6. 10:49경 폭행

G는 2018. 11. 6. 10:49경 K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치우지 않았다고 야단치자 피해자가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배송을 빨리 나가야하는데 커피를 왜 쳐마시고 있냐"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 2018. 11. 6. 11:25경 폭행

G는 2018. 11. 6. 11:25경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된 다마스 화물차에 물품을 실어놓으면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 2018. 11. 7.자 폭행

G는 2018. 11. 7. 15: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H의 범행

가. 2018. 8. 20.자 특수폭행

H은 2018. 8. 20. 09:00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2의 비행 기재 사실로 인해 부어오른 발바닥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양손바닥을 5회 때렸다.

이로써 H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1. 2.자 강요

H은 2018. 11. 2. 14:21경 K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영상 앱으로 피해자가 컴퓨터에 배송지 전표 입력 작업을 하다가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왜 졸고 있냐, 냉장고에 있는 얼음팩을 가져와 눈 부위에 대고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앞으로 가 CCTV를 보면서 계속 서 있어라"고 하고 피해자가 힘이 들어 고개를 숙이면 다시 사무실 컴퓨터 스피커로 "너 똑바로 해라, CCTV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서라"라고 하는 등 그동안 H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분 동안 얼음팩을 눈 부위에 댄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H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8. 11. 8.자 상해, 강요

H은 2018. 11. 8. 00:00경 K 창고에서 피해자가 누룽지 기계를 세척할 때 세정제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10회, 좌측 머리를 1회, 뒤통수를 1회 내리차고, 계속하여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6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좌측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재차 쓰러뜨렸다. 그 후 화장실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0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0회 걷어찼고, 이어 슬리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0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이 부어 있으면 안 된다. 잠을 자지 말고 아침까지 얼음팩을 얼굴에 대고 창고 문 앞에 서 있어라. 휴대전화 앱으로 CCTV 영상을 보고 만약 마사지를 하지 않고 잠을 자면 다시 와서 때리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7경까지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H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획증후군(대퇴부, 양쪽)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끝-

